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10. 4.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 의안은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를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까지 확대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과 의회 입법활동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군수 ⇒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

나. 비용추계서 작성부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항)

- 군수 제출 의안 : 소관부서
- 의원 발의 의안 : 의원
- 위원회 제안 의안 : 위원회

다. 비용추계서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3항)

- 군수 제출 의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
- 의원 발의 의안 : 의안 발의 시
- 위원회 제안 의안 : 의안 발의 시

4.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4.~10. 10.(7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10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발의한”을 “제출 또는 발의·제안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수가 발의하는”을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제출 또는 발의·제안하는”으로 한다.

제5조 중 “군수”를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은 의원 및 위원회에서 작성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에(주민청구 조례안인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를 “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의하는”을 “제출하는”으로,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를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과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 부의안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 3. (생략)	제2조(정의) ----- -----. 1. ----- 세출 또는 발의·제안한 ----- ----- ----- ----- -----. 2. · 3. (현행과 같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①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제출 또는 발의·제안하는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 ----- -----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
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공기업특별
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에는 의안의 소관부
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
다. <단서 신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
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
민청구 조례안인 경우에는 의회
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
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
여 작성하되,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
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주민청
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 다만, 의원 및 위원회가 발
의·제안하는 의안은 의원 및 위
원회에서 작성한다.

② -----
----- 전에 ---

-----.

③ -----

----- 제출하는 -

-----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과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 부의안
에 -----.